제80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국토교통부)	1.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신설)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맞는 건축기준을 제정	1.비중요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기준(신설)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개최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의 배치 기준 (응급의료인력)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 (이송수단) 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구급차등 1대	1.비중요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신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법률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1.비중요
4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1.채권채무관계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 상향(강화) ○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 기준을 채무금액 185만원 또는 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 1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	1.비중요
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ㅇ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제시 규정 ㅇ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등 지정 절차 규정 ㅇ 그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2.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의무 신설(신설) ㅇ (보수교육 대상의 소속기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법인,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ㅇ (종사기간 및 교육시간) 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3.환경교육관련 행정제재 처분기준 신설(신설) ㅇ 환경교육사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ㅇ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ㅇ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2.비중요 3.비중요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신설) O 응급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회~3회 이내 응시 제한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기준 신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응급의료 인력등 확보 의무가 있는 행사 범위(신설) ○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 의무를 가지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행사의 종류 및 참석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행사”란 다음 각 호의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2. 지역축제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는 공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등(단,「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에서 이뤄지는 공연은 제외한다.)	
7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전통식품 표준규격(신설) 1. (국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국수류는 세균수 1.0×105 CFU/g이하(건면제외),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함 2. (미숫가루)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미숫가루는 산불용성회분 0.7% 이하, 진균수 1.0×103 CFU/g이하 이어야 함 3. (삼계탕)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삼계탕은 휘발성염기질소 15.0 mg/100 g이하(단, 비가열 제품에 한함), 필수 원료로 통닭, 참쌀 및 인삼을 포함해야 함 4. (곰국)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곰국 중 꼬리곰탕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은 꼬리뼈를 포함한 육함량이 15.0% 이상 이어야 함 5. (양념육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양념육류 중 양념갈비는 '구이용', '찜용' 등과 같이 조리용도를 주 표시면에 표기하여야 함 6. (오미자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미자가공품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오미자가공품)에 적합해야함	
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해경 미가입어선 통보 톤수 확대 및 수협 미가입어선 해수부 통보 규정 마련(신설)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 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이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는 규정 마련	1.비중요
9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체계 강화(강화)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의 면제 기준을 삭제 2.전문의약품 제조방법 허가 후 변경관리 강화(강화) 허가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품목의 제조방법은 별도의 양식에 따라 간략히 기재하지 않고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CTD 제3부 품질평가 자료 중 3.2 본문 중 해당 내용으로 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 제한 기준 신설(강화)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기준(0.5ml 이하) 설정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1.채용 비위 관련 합격 및 임용 취소(신설)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비중요
1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비카드 여전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강화(강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조정하되,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 지급할 경우 레버리지배율은 7배를 적용	1.비중요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신설)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현행 모범규준 법규화 2.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신설) 공모펀드 설정시 2억원 이상 자기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행정지도 법규화 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명의무 강화(강화)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비춰 가장 유리한 종류형 집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1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신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설립목적, 적정 기술인력(환경교육사 1인 이상 상시 고용)) 2.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정비(강화) <자격요건> ㅇ (1급) - 2급 취득 후 3년 경력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ㅇ (2급) - 3급 취득 후 3년 경력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환경교육 관련 6년 경력 ㅇ (3급) - 누구나 - 환경 관련 학사 취득 시 기본과정 유사과목 수강 면제 - 간이과정 폐지 <교육내용> - (1급) 10과목 120시간(이론 60, 실습 60) - (2급) 10과목 144시간(이론 84, 실습 60) - (3급) 10과목 144시간(이론 93, 실습 51)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강화) ㅇ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대상기관, 지정절차 등을 정함 ㅇ 지정기준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 교수요원, 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과 인력을 확보,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 함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품질검사 대상 및 품질검사 수수료 부과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 추가(강화) 품질검사 대상 :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 아스팔트 및 항공유 품질검사 수수료 부과대상 :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아스팔트 및 항공유	1.비중요
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30일, 60일) 기준을 정함 2.운항관리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신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과정에 “운항관리사과정”을 추가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추가(신설)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처분 기준(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신설 4.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 - 2개 이상의 처분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처분만 적용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 명료화 - 처분기간의 산정 등 기준 명확화	